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고동진 · 안철수
김선교 · 박충권 · 배준영
최수진 · 박준태 · 주호영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(이하 “농어민등”이라 함)이 농업·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(이하 “면세유”라 함)에 대하여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.

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,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(이하 “농기계등”이라 함)의 보유 현황과 영농·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.

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

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사용”을 “사용(농어민등이 제3항에 따른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유”를 “보유(임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, “양도”를 “양도·임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중 “사용 실적”을 “사용 실적, 임대 현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생산 실적”을 “생산 실적, 임대 현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한 농기계등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(이하 이 조에서 “농어민등”이라 한다)이 농업·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-----사용(농어민등이 제3
항에 따른 농기계등을 임대하
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

2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(이하 이 조에서 “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”이라 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,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농기계등”이라 한다)의 보유 현황과 영농·영림 또는 어업 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, 농기계등의 취득·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, 이농(離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보유

(임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
에서 같다)-----

-----양

農)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
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
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
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
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
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
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
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
막 달의 다음 달 말일(이하 이
항에서 “제출기한”이라 한다)까
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
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
개월이 되는 날(이하 이 조에
서 “최종 제출기한”이라 한다)
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
요구하여야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
계,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:
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(생 략)

도·임대-----

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-----.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<u>사용 실적</u>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,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: <u>생산 실적</u>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⑥ ~ ②② (생략)	나. <u>사용 실적, 임대 현황</u>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<u>생산 실적, 임대 현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⑥ ~ ②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